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5. 31.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 및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단의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안과제의 공개 및 대외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8-0-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5.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7.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시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일반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절차)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 시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검토기준 표[별표1]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별도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안등급)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연구책임자는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7조(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에 위탁연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과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의 방문·견학 등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 및 국제행사 등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보안)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별표2)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는 외국인의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결과물 반출 및 대외 제공시 연구책임자는 보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보안관리심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안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0-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은 물론 기간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보안서약서(연구참여자용)

소속기관 :

직위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원기관)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